

#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

제 정 : 2010. 10. 1.  
개 정 : 2012. 2. 25.  
개 정 : 2013. 3. 27.  
전면개정 : 2016. 2. 24.

**제1조 (설치 및 명칭)** 대한장애인력비협회(이하 "장애인력비협회"라 한다.)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라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, 심판으로서의 역할, 임무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과 장애인체육 발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3조 (적용)** ① 이 규정은 위원회,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심판위원회 및 그 단체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② 시도장애인력비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체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장애인력비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이 규정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**제4조 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2. 심판의 권익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3.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
4.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

##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

**제5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3인 이내

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장애인력비협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2항, 제3항,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2.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3.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20%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장애인력비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 6 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**제 7 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 8 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 9 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10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1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**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

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4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###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

**제15조(심판등록 구분)**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, 당해 단체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.

1. 국제심판
  - 1) International Referee
  - 2) Zonal Referee
  - 3) Rookie
2. 국내심판
  - 1) 1급
  - 2) 2급
  - 3) 3급 (기록심판)

**제16조(심판등록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.

1. 당해 단체 법제·상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자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

**제17조(심판등록 및 활동)**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력비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력비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당해 단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가맹단체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8조(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)** 장애인력비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, 선수·지도자경력, 심판경력, 교육이수경력,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력비협회 규정에 따라 장애인력비협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심판 양성 교육

**제19조(가맹단체별 교육실시)** ① 가맹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·운영하

여야 하며,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.

② 교육내용은 보수교육, 강습회,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,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, 경기규칙, 판정의 이론, 실기 교육 등 당해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자격증(수료증)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·운영해야 한다.

④ 심판의 급수별 운영 현황은 표-1을 참고한다.

## 제 5 장 심판평가제

**제20조(심판평가)** ① 위원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심판부장, 장애인력비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,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.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,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.

## 제 6 장 심판배정

**제21조(심판기피 및 제척)** ① 위원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,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당해 단체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, 지도자의 친인척,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**제22조(심판배정)** ①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경기위원장 혹은 회장이 지명한 임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(팀)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.

**제23조(심판판정)** 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.

②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심판과 확인하며, 양식에 따라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장애인력비협회 대회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24조(심판의 품위)** ① 심판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.

② 심판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④ 심판은 장애인력비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장애인력비협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(문책) 받을 수 있다.
- ⑥ 심판은 선수·지도자의 팀(단체 등) 입단,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,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거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 7 장 상 별

**제25조(심판의 상벌)**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장애인력비협회의 법제·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-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,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.

**제26조(심판의 포상)**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력비협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력비협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 8 장 심 판 매 뉴 얼

**제27조(심판매뉴얼)** 위원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 (10. 10. 1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0.10.1)

### 부 칙 (12. 2. 25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2. 2. 25>

### 부 칙 (13. 4. 2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일부 승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. (2013. 3. 27)

### 부 칙(16. 2. 24.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. <전면개정 2016. 2. 24.>

<표-1> 급수별 운영 현황

급수	자격 조건	활동 범위
International Referee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· 세계선수권대회 및 패럴림픽 참가
Zonal International Referee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· 지역대회 · IWRF에서 승인한 대회 ·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
Rookie	1. 위원회에서 추천 자중 국제연맹에서 자격이 되는 자	
국내 1급	1. 2급 자격 소지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. 최근 3년간 10경기 이상의 경기를 심판으로 활동한 자 3. 위원장에 의하여 승급 테스트에 통과한 자 4. 1~3호에 해당하는 자중 필기 테스트를 통과한 자	· 각종 대회 심판 활동 · 국제심판 응시 자격 부여 · 심판 강사 교육
국내 2급	1. 3급 자격을 이수한 자 중 장애인력비협회 심판 강습회 2회 이상 수료한 자 2.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대회 중 2회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. 위원장에 의해 승급 테스트에 통과한 자 4.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유사종목 심판 경력 3년 이상인 자 5. 1~4호에 해당하는 자중 필기 테스트를 통과한 자	· 각종 대회 심판 활동 · 국제심판 응시 자격 부여 · 국내 3급 심판 자격 교육 강사 자격 부여
국내 3급 (기록심판)	1.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심판 강습회를 참가하여 필기시험 70% 이상을 통과한 자 2. 그 외 유사 종목의 경험이 있어서 교육을 이수한 자	· 기록심판 활동
공통사항	체력테스트 통과자 (Beef test 혹은 셔들런) 60회 ~ 70회 이상	